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45
------	------

2025.04.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2월 3일, 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3.4.) 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보류)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4.24.) 재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주용태 경제실장)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해외 기업·자본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 나.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6조)
- 다. 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7조부터 제2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됨.

나. 투자진흥재단의 설립 경위와 인베스트서울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급변하는 국제 금융·경제 환경 속에서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서울경제진흥원 산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인베스트서울센터로 개편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였음.
- 그러나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베를린(독일), 도쿄(일본) 등 세계 주요 도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두고 적극적인 해외 기업·자본유치 활동을 하는 반면, 서울경제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기관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 전담기관으로서의 대외 신뢰성 확보 및 파트너십 형성에 한계가 있었음.
- 이후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¹⁾’을 공표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²⁾)를 연 300억달러 이상 유치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할 독립기관 설립을 계획³⁾함.
- 그리고 동 계획에 따르면 독립기관의 최종 설립까지 행정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로 확대·운영하면서 최종단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 투자전담기관 조성 단계와 기능 >

단 계	기 능	운영기간
-----	-----	------

1) 서울비전2030(2021년 9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으로 ①상생도시, ②글로벌 선도도시, ③안심도시, ④미래감성도시를 제시함.

2)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

3)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조성계획(2021.9.30., 경제정책실장 방침)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기능	2020.1월~ 2022.2월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청) 운영	- 투자유치 정보제공 - 마케팅 기능 강화 - 직접투자유치 기능 강화	2022.2월~ 재단설립까지
재단법인 운영	- 산업별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킹 형성 - 서울시 외국인투자 관문 역할 - 글로벌 레벨 종합서비스 제공	준비중

- 한편 현재 인베스트서울은 사실상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구(IPA)⁴⁾로 기능하면서 ①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치, ② 글로벌기업의 서울 유치, ③ 서울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고 있음.

< 인베스트서울 주요사업 >

주 요 사 업	사 업 내 용
서울기업 해외자본 유치	- CORE기업(투자 유망기업 선발 및 관리):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선정 및 육성프로그램 제공 - 투자자네트워킹: 서울기업에 관심있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 기업-투자자 연결: 미국 등 서울 관심국가 등에 온·오프라인 IR
글로벌기업 서울 유치	- 타깃 기업군 마케팅: 테크유니콘, 지역본부 등 고급 인력·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 중심 타깃 마케팅 및 기업유치 IR - 인센티브: FDI올인원패키지 등 자금지원,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등 공간제공 -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 솔루션센터 운영 등 애로사항 관리
서울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 전략수립: FDI 및 타도시 주요정책 분석 강화, 투자자문의회의 등 - 네트워킹: 주한상의, 외투기업 등 유관기관 중심 네트워킹 진행 - 개발부지·투자환경 홍보: 부동산 박람회 참여, 주요 투자지 중심 타깃팅

4) IPA(투자유치 전담기관):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약자. 통상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늘리는 권한을 가진 국가 혹은 지자체 기관'을 의미함.

- 그리고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 투자유치액(FDI)은 100억 달러~129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07억 2,600만 달러, 2023년 145억 5,400만 달러, 2024년 129억 4,200만 달러임.

< 2022년~2024년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액(FDI) 현황 >

단위: 백만불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12월 기준)
		신고액	신고액	신고액
업종별	총계	10,726	14,554	12,942
	제조업	147	1,912	974
	서비스업	9,300	12,274	11,733
	기타	279	368	236
유형별	총계	10,726	14,554	12,942
	M&A형	3,517	6,804	5,539
	그린필드형	7,209	7,750	7,404
국가별	총계	10,726	14,554	12,942
	미국	2,435	1,519	1,326
	EU	1,767	4,382	3,063
	일본	289	387	238
	중화권	2,741	2,531	790
	중국	150	90	413
	기타	3,494	5,736	7,112
	총계	10,726	14,554	12,942
자금별	신규투자	3,219	5,880	5,022
	장기차관	156	270	1,225
	증액투자	7,351	8,404	6,695
	총계	10,726	14,554	12,942

- 다만 인베스트서울은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과 개선, 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 등 전반에 관여하면서 INSC⁵⁾를 통해 신고된 모든 금액을 기관의 성과로 책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는 각종 기업의 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이 소재하고, 서울시의 지원 및 노력과는 별개로 기업이 각자 투자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성과책정 방식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5) INSC: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

- 현재 서울시는 재단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재단설립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와 대시민 토론회(2025.2.6.) 등을 추진하였음.
- 먼저 행정안전부는 ‘조건부’를 전제로 재단설립에 동의(2024.9.10.)하면서 정부의 인베스트코리아와의 차별화 방안 마련 등 세가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는 동 내용을 재단설립계획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에 회신함.

<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의견 및 서울시 조치현황 >

□ 행안부 설립협의 결과 : 조건부 설립 동의('24. 9. 10.)

- ▶ 종합의견 : 국가 수도로서 해외 경쟁도시 사례와 같이 도시 차원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 필요성 인정
- ▶ 보완의견 : ① 인베스트코리아와의 차별화 전략 마련
② 해외 투자유치 전담기관 성공 사례 분석 및 반영
③ 재단의 자체 수입 확보 방안 마련
- ▶ 이행방법 : 재단 설립계획 내 행안부 의견 반영

□ 설립계획 내 보완내용 반영

- ▶ 보완 1. 서울 전략산업 중심의 1:1 맞춤 후속 투자유치 유도
 - 핀테크, AI, 바이오 등 市 전략산업 투자유치로 제조업 위주인 인베스트코리아와 차별화
 -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유도 등 진출기업 대상 사후 지원
- ▶ 보완 2. 해외 사례로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의 투자유치 전략 도출
 - 코펜하겐 투자청, 런던애포트너스 등 우수 사례 분석 결과 반영
 - 지역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 사후관리 및 후속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 도출
- ▶ 보완 3. 해외 기업 입주 임대료 및 투자유치 사업 위탁 수익 확보
 - '30년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여의도 이전 후 기업 입주공간 임대 수익 창출
 - 인베스트코리아, 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투자유치 전담기관 공동 사업 추진

-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2차례 실시한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의 설립 타당성은 인정되었으나 적정인력의 운영 대책과 예산 편성상 항목을 조정하라는 의견이 제시됨.
- 서울시는 당초 재단의 정원을 62명으로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나 이후 50명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재검토를 받게 되었고, 조직 편성이나 과업의 변경 없이 인원만 조정된 것과 관련하여 업무과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 필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국제금융오피스는 현재 서울경제진흥원이 대행 운영 중이므로 재단 예산 편성계획에도 ‘공기업 대행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출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내용 및 결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구분	1차 검토	2차 검토
시기	2023년 3월 ~ 2024년 1월	2024년 5월 ~ 2024년 6월
항목	재단설립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 경제성, 설립계획 적정성 등	2024.1월 타당성 검토 대비 2024.3월 시 사업계획상 변경된 인력·예산 조정 내용 반영
결과	설립 타당성 인정	(인력) 적정인력 확보 노력 필요 (예산) 전액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 마지막으로 지난 2월 6일 개최된 대시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코트라, 서울연구원, 인베스트서울에서 각 담당자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고, 발제와 토론, 시민 의견제안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음.
- 주요 질문으로 타 도시 대비 부족한 투자유인의 극복 방안 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인센티브와 추후 계획된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

< 토론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질의 내용	서울시 답변
기존 서울경제진흥원 내 조직 운영 방식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성과 등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고객은 중소기업, 미션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고객군을 달리한 조직 설립과 전문성 있는 인력 운영을 통한 대외 신뢰성 확보
해외 도시 단위 IPA의 인력 규모(200명)에 비해 재단 규모(34명)으로 당초 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초기 출범은 34명 규모이나, 조직 안정화 정도와 사업 효과성 반영 후 점진 증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대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타 도시 대비 부족한 투자유인(높은 법인세율 등)에 대한 극복 방안	서울시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활용하고, 대규모 부지개발 계획(용산·창동·잠실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이미 조례 제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의
내용이 재단 설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향후 재단 운영의 중·장기 계획에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 예정

다. 서울의 외국인투자 여건과 투자재단의 기능

- 서울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2007.12.21.)에 따라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등 금융인프라 개선과 국제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영국의 컨설팅회사 지옌(Z/yen)이 최근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IC)⁶⁾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133개 도시 중 10위(직전 11위)를 기록하였고, 5대 평가 항목(기업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도시평판) 등이 모두 15위권 내에 진입하며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 외에도 임금 수준과 법인세율이 높아 외국인투자를 유도할 요인은 낮은 상황임.

<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혜택과 자격 >

금융중심지 세제 혜택 자격요건

- ▶ 금융중심지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 제외

금융중심지 세제 혜택

- ▶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전액 면제
- ▶ 3년 이후 최대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6)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옌(Z/Yen)사가 '07년부터 전 세계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하여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지수. 35차 보고서(2025.3.21.) 발표 당시 서울은 파리(14위), 베이징(15위), 도쿄(19위) 보다 상위 랭크됨.

-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에 따라 첨단산업⁷⁾과 주력산업⁸⁾분야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92%가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도 정책과 서울시의 산업구조에 차이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투자환경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용보조금,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지원 등 다양한 서울형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구 분	인센티브 내용
현금지원	- 신성장동력기산업, 첨단기술, 소재·부품산업,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창출기업, 연구시설 신증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을 분담 - 토지매입비, 임대료는 중앙정부와 3: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연구개발, 금융·보험, 지식서비스,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10년간 임대료 75% 지급(3년간 FDI 및 고용조건 이행 시) - 현재 마포구 상암동(첨단산업센터), 강남구 ASEM타워 등에 3개 지역이 운영중
고용보조금	- 서울시가 지정한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지정업종: IT·융합, 디지털 콘텐츠, 녹색,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 등 - 내국인 상시고용 5명 초과인원 1인당 6개월(월 1백만원 이하) 지급(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
서울형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지원	- (2024년 신규시행)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 보육시설 입주기회 제공 보육시설: 서울창업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양재AI허브 등

-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는 제한적 투자여건 속에서도 국내 FDI의 45%를 유치하고 있으며, FDI 신고 금액 대비 도착 금액 비중도 81%에 이르는 등 타지역에 비해 계획된 외국인투자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 강화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됨.

7) 첨단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8)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 다만 투자재단의 설립은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바, 기존의 투자전담기관과 비교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재단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진흥재단 기능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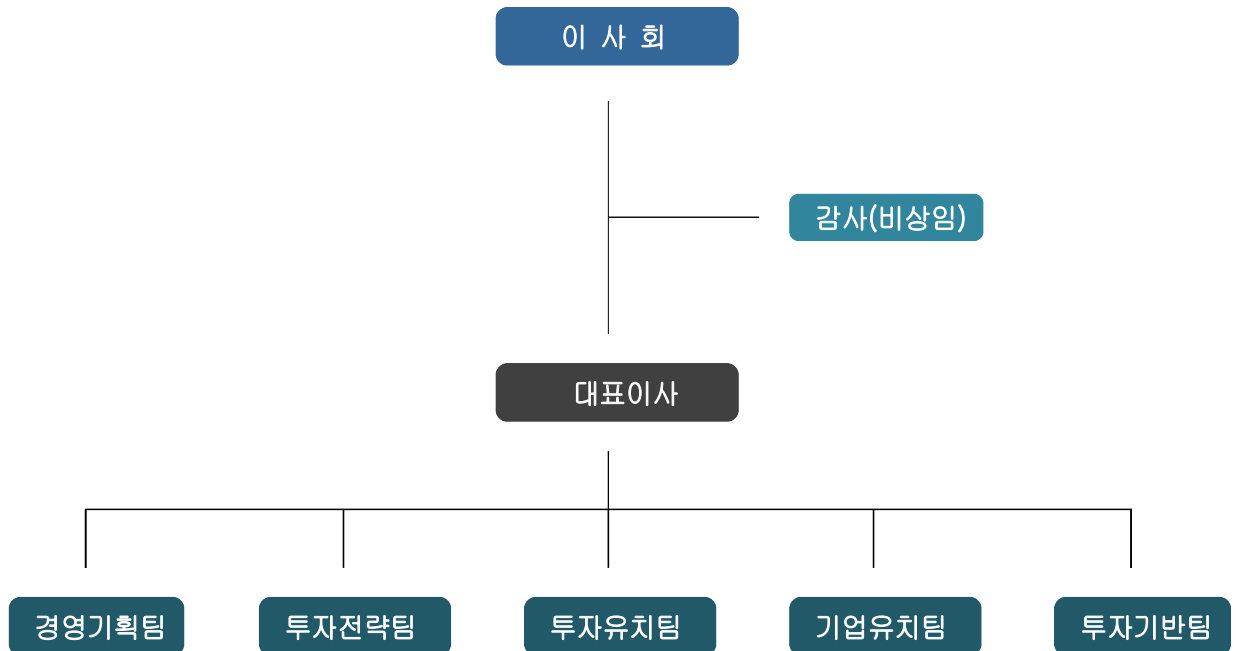
구 분	인베스트서울(기존)	서울투자진흥재단(추가 기능)
기능·업무	<투자전략> -장기 투자전략 수립 -브랜드 글로벌 홍보 -투자정보 제공, 유관기관 네트워킹	<투자전략> -서울시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 ▶ 투자동향·통계, 사업성과 분석 ▶ AI·바이오·핀테크 등 맞춤형 전략 수립 -국내외 싱크탱크 운영 ▶ 금융전문가, 외투 기업 등 협의체 운영 -산업별 전담 프로젝트메니저 운영 ▶ 산업별 전담 PM 운영
	<자본 유치> -투자 네트워크 발굴·매칭, 투자 유치단 운영 -해외 IR개최·운영, 기업주도형 IR 지원 -서울투자자포럼(SIF) 개최	<자본 유치> -서울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특화 센터 운영 -서울 기업 온라인 세일즈(분석 리포트)
	<기업유치> -글로벌 컨퍼런스·전시회 연계기업 유치 -글로벌 타깃기업 발굴, 현지홍보	<기업유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타깃 맞춤형 유치 지원
	<기반조성>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관리	
기대성과	<출범이후 성과>(2022~2024년 누적) -투자유치액(FDI) : 382억불 -투자유치건수: 4,651건 -예상고용창출: 60,162명 ※INSC 신고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192억 (서울 856억, 지방 336억) -부가가치유발효과: 450억 (서울 319억, 지방 131억) -취업유발 인원 증가: 717명 (서울 538명, 지방 179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산

< 인베스트서울-서울투자진흥재단 조직구조 >

○ 현행 인베스트서울: 3개팀, 22명(정원 기준)



○ 서울투자재단 설립 직후 : 5개팀, 34명(※ 단계적 충원 예정)



라. 조례안 조문 검토

- 동 조례안은 총 21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과 기본사항,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총칙	3개 조문 :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사항	8개 조문 : 제4조 ~ 제12조 재단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재단운영	7개 조문 : 제13조 ~ 제21조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업무의 위탁 보고 및 검사, 경영평가 및 확인·감독, 공무원 파견

- 먼저 안 제1조는 목적사항으로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 유치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정보제공,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지원,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장이나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등으로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함.
- 안 제7조~제9조는 임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1조~제13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고(안 제11조), 출연금 교부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안 제13조)으로 규정함.

- 안 제14조~제16조는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연도는 일반회계 연도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14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15조), 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안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제20조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안 제17조), 재단 경영상황 및 필요 사항의 보고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며(안 제18조),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 권고(안 제19조)와 공무원 파견(안 제20조) 등에 관해 규정함.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서울시 다른 재단법인의 조례를 준용하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은 안 제12조제3항(출연금 및 기금), 안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19조제3항(경영평가)의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과 승인 사항’,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절차’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을 동 조례안에 대략적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기에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에 그 내용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통례임.
- 더욱이 동 조례안의 규칙 위임 규정과 관련하여 아직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규칙의 대략적인 내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 조례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중요사항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지양해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규칙에의 포괄위임과는 별개로 동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조상 규칙에 위임하는 조문을 굳이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재단 운영의 형식적·절차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마. 종합의견

- 투자전담기구의 설립은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되고 있고,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적정성이 검증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설립을 위한 절차와 조건은 갖추어졌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해외 주요도시 투자전담기관의 인력은 통상 200명 이상인 반면 서울투자진흥재단은 50명 수준에 불과하고, 연차별 외국인 자본과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어떻게 증대시킬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세밀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기존 인베스트서울과 실질적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단설립에 투입된 막대한 자원이 매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보완을 요청한 ‘재단의 설립 후 수익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의 여의도 이전(2030년 예정)시 기업 입주공간 확대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하였는바, 외국인투자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동 재단이 고유사업분야가 아닌 부동산 임대수익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기관의 비전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 밖에도 최초 출범시 투자유치 전문가 영입 방안 등 인적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동 조례안 제정 후 마련될 예정으로, 재단설립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시의회에서 관련 재단설립을 통한 비전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투자진흥재단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조직관리를 위해 기관장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며,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는 각각 2년으로 함.
- 동 조례안의 근거가 불분명한 ‘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예산 및 결산서류 등의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는 각각 2년으로 함(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함(안 제8조제2항)

-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과 승인을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을 수정함(안 제15조).
- 결산서류의 제출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제출 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45
----------	---------

제안년월일 : 2025년 4월 2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투자진흥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를 각각 2년으로 함.
- 동 조례안 중 근거가 불분명한 ‘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예산 및 결산서류 등의 범위와 절차를 명문화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관장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임원의 최초 임기와 연임 단위는 각각 2년으로 함(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함(안 제8조제2항)
- 출연금의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5조).
- 결산서류의 제출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제출 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을 ‘이사장을’ 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대표이사, 이사장을’ 을 ‘이사장을’ 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3년’ 을 ‘2년’ 으로, ‘1년’ 을 ‘2년’ 으로, ‘대표이사’ 를 ‘이사장’ 으로 한다.

안 제7조제4항 중 ‘대표이사를’ 을 ‘이사장을’ 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대표이사가’ 를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로 한다.

안 제9조(대표이사와 감사)를 제9조(이사장과 감사)로 조제목을 변경하고,
제9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 을 ‘이사장은’ 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대표이사가’ 를 ‘이사장이’ 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 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u>이사장 및 대표이사</u> 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대표이사, 이사장</u> 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u>3년</u> 으로 하고, <u>1년</u>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u>대표이사·이사</u>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u>대표이사</u> 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 <u>이사장</u> 을 ----- ----- ----- ----- ② <u>이사장</u> 을 ----- ----- ③ ----- <u>2년</u> -----, <u>2년</u> ----- -----, ----- <u>이사장</u> · ----- ----- ④ <u>이사장</u> 을 ----- -----
제8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u>대표이사</u>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8조(이사회) ① (생략) ② ----- -----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③ (생략)
제9조(대표이사과 감사) ① <u>대표이사</u> 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9조(이사장과 감사) ① <u>이사장</u> 은 ----- ----- ② (생략)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대표이사</u> 가 임명한다.	제10조(직원) ----- ----- <u>이사장</u> 이 -----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설>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③ <신 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19조(경영평가) ① ~ ② (생 략) <u>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① ~ ② (생 략)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 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